제118회 창원시의회 (제1차 정례회)
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[2022. 9. 28.(수)]

#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#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# 심 사 보 고 서

2022. 9. 28.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: 2022. 9. 7.

전홍표·김남수·김묘정·김상현·김우진·문순규
박강우·박선애·박해정·백승규·서영권·성보빈
심영석·오은옥·이우완·이원주·이종화·이해련
정길상·정순욱·진형익·최은하·최정훈·한상석
한은정·황점복 의원(26명)

나. 회 부 일 자: 2022. 9. 8.

다. 상정 및 의결 일자 : 제118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 개회 중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(2022.9.28.) 상정, 질의・답변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전홍표 의원)

가. 제안 이유

❍ 급수시설의 검사의뢰 및 검사 결과 공표,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창원시민이 이용하는 수돗물의 정수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 내용

❍ 조례의 목적에 관한 일부 사항을 변경함(안 제1조)

❍ 수질검사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39조)

❍ 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44조)

❍ 검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45조)

❍ 수돗물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46조)

❍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47조)

다. 참고사항

❍ 신·구조문대비표: 의안번호 46, P5 ~ P8

❍ 관계 법령: 의안번호 46, P9 ~ P12

❍ 현행 조례: 의안번호 46, P13 ~ P30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(전문위원 박선희)

□ 개정 배경

❍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한 수질 검사, 검사결과 공표 등의 조항을 세분화하고 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조례 개정 사항임

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가. 안 제1조(목적)는

❍ 조례의 목적에 먹는물 수질 검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임

나. 안 제39조(수질검사와 수수료) 삭제는

○ 안 제46조와 제47조에 수돗물 수질검사와 수수료 조항을 세분화하여 신설함에 따라 중복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임

다. 안 제44조(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발급)는

○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 내용을 추가하여 그 처리기간과 검사 기준, 검사성적서 발급 등 사항을 구체화하여 신설하는 내용임

라. 안 제45조(검사결과의 공표)는

○ 수질검사 시 '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(환경부 고시)' 의 법정감시항목* 기준을 추가 강화하고, 그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(*별표 1, P5)

마. 안 제46조(수돗물의 수질검사)는

○ 수질검사 결과 표시, 부적합 시 소유자·시설물 관리자에게 개선 요구 등 수도시설 관리에 대한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임

바. 안 제47조(수수료)는

○ 현행 조례의 수질검사와 수수료 조항이 세분화 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신설하는 내용임

□ 종합의견

○ 금회 조례 개정은 상위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질검사 기준 강화, 검사결과 공표, 수도시설의 검사결과 표시 등의 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임

○ 또한, 법정감시항목 검사 결과를 공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돗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, 시민들의 수도행정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음

○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 지난 7월 석동정수장 유충 발생 사태와 연계하여 볼 때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됨

○ 다만, 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 내용인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표현, 문맥 등을 보다 명확하고 매끄럽게 정비하고, 관련 조례와의 중복 여부, 근거 조항의 정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·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 : 없음

6. 심사결과 : **수정 가결**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※ 심사보고서 붙임 서류**

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붙임1 (수정안)

#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의안 번호 | 제46호 관련 |
|---|---|

발의일자 : 2022. 09. 28.
발 의 자 : 문화환경도시위원장

## 1. 수정 이유

○ 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근거 관계 법령의 오류를 수정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 수정내용

○ 안 제1조(목적)
"「먹는물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먹는 물" 을
**"「수도법」 제21조, 제33조에 따라 수돗물" 로 수정함**

○ 안 제44조(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발급) 제1항
"먹는 물" 을
**"「수도법」 제21조제3항, 제33조제3항" 으로 수정함**

○ 안 제44조(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발급) 제3항
"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다" 를
**"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다." 로 수정함**

#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먹는물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먹는 물”을 “「수도법」 제21조, 제33조에 따라 수돗물”로 한다.

제44조(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발급) ① “먹는 물”을 “「수도법」 제21조제3항, 제33조제3항”으로 한다. 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“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다.”를 “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다.”로 한다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수도법」 제38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2조에 따라 창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 필요한 사항과 「먹는물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---. | 제1조(목적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「수도법」 제21조, 제33조에 따라 수돗물 ----------. |
| 제39조(수질검사와 수수료)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<br>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군·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br>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,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| <삭 제> | <개정안과 같음> |
| 제5장 관 리 | 제5장 관리 및 수질검사 | 제5장 관리 및 수질검사 |
| <신 설> | 제44조(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발급) ①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<br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뢰 | 제44조(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발급) ①「수도법」제21조제3항, 제33조제3항에 ----------<br>② 개정안과 같음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를 받은 때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검사를 마쳐야 한다. 다만, 검사의 특성상 20일 이내 검사를 마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|
| |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다. 다만,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3조의 기준에 따른다. | ③ ----------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다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|
| |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| ④ ~ ⑥ 개정안과 같음 |
| | ⑤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검사결과는 해당 검사시료에 한정된 것이며,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고 용기 또는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해서는 안된다. | |
| | ⑥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반환요구하거나 말소할 수 있으며, 말소시에는 대상자명·말소사유 및 대상물품명을 공고한다. | |
| <신 설> | 제45조(검사결과의 공표) 시장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수도정책에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정감시항목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| 제45조(개정안과 같음) |
| <신 설> | 제46조(수돗물의 수질검사) 시장이 「수도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한 수도시설에 검사결과를 표시할 수 있으며, 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 | 제46조(개정안과 같음)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이 없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 | |
| <신 설> | 제47조(수수료)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군·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| 제47조(개정안과 같음) |
| 제44조 (생 략) | 제49조 (현행 제44조와 같음) | 제49조 (개정안과 같음) |
| 제45조 ~ 제54조 (생 략) | 제51조 ~ 제58조 (현행 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음) | 제51조 ~ 제58조 (개정안과 같음) |